

May 4, 2020

Legal Update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

외환위기 이후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 활동 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정보의 공개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ESG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서, 그간 자율공시 사항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공시사항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의무공시 대상이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제도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보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주요내용

2018. 12. 1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제출대상 기업들은 2019. 6. 3. 까지 첫번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공시 의무화 이후 두번째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감사·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공시 시한도 2020. 7. 1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내용 중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큰 사항을 10가지 핵심원칙으로 선정하여 공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2017년에 자율공시항목으로 도입되었으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고 참여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개선작업을 통해 이를 의무공시항목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될 세부 공시사항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라는 세가지 카테고리 하에 10가지 핵심원칙을 공시항목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회사의 준수 여부를 설명(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원칙의 내용 중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15가지 항목(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집중투표제 채택,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별첨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하여, 각 기업의 핵심지표의 준수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제출대상 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로 제재받을 수 있고,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1호, 제2의2, 제24조의2 제2항, 시행세칙 제7조의2 제3항).

2. 2019년 공시 완료 이후 가이드라인의 개정

한국거래소는 2019년에 제출 완료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기업들이 15개의 핵심지표 중 평균 8.01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53.4%) 파악되었으며, 핵심지표 중 이행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와 집중투표제 채택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전수조사 결과 및 관계자들로부터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여 2020. 3. 3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공시 내용 부실을 해결하고자 필수기재사항을

제시한 점,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한 점, 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성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점,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의 현황과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점 등입니다. 참고로, 2020. 1. 29.에 시행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는 2020. 1. 29. 이후 선임 또는 중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되는 반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2020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바로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현황과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성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2020. 8. 5.부터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여성 이사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과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시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전망 및 대응방안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를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할 계획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시 내용의 충실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2019년에는 공시 의무화 후 첫 해로서 계도기간으로 삼아 정정공시 요구 없이 기재미흡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로 마무리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정공시를 활용할 계획을 밝힌 만큼 공시 사항의 누락이나 부실 기재에 대해서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공시 제재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19년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원칙 별 준수 여부, 미준수 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현황만 나열하거나 세부원칙에서 요구하는 개별 기재항목들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기재한 공시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공시 내용은 올해부터 정정공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항목 중 현행 상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집중투표제 채택, 전자투표제 실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 매년 미이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사항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에 따라 기업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시행되는 것이고 보고서에 드러난 지배구조 현황이 시장과 투자자의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ESG정보를 활용한 투자방침을 밝히는 등 앞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과 수탁자책임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지배구조 관련 공시대상정보의 확대가 추진되고 공시 이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보고서의 부실한 기재나 부정확한 정보 기재로 인하여 한국거래소의 제재나 시장의 평가 시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 보고서를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추이를 주시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기초가 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기업으로서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대하여 단순 규제 강화나 비용 증가 측면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ESG 투자 전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연락처 : 최정은 파트너변호사 / T. 02-316-1672 E. jechoi@shinkim.com)

Contacts



장재영
파트너변호사

☎ 02-316-4350

✉ jychang@shinkim.com



최정은
파트너변호사

☎ 02-316-1672

✉ jechoi@shinkim.com



이수균
파트너변호사

☎ 02-316-1630

✉ sklee@shinkim.com



이호연
파트너변호사

☎ 02-316-1739

✉ hylee@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